

## 분과위원회 설치(안) 회의자료 - ② 재판제도분과위원회

### 1.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

- ▣ 사법행정의 주요 기능과 역할 중 하나로서 재판제도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
  -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과 핵심적 기능은 재판 업무에 있음
  -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한 재판제도의 연구 및 발전은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
  - 종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재판제도를 연구·검토·지원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, 법원행정처의 규모 축소, 탈법관화와 더불어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재판제도의 연구·검토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

### 2.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 구성 방안

- ▣ 위원 구성 방안 ⇨ 내부위원(법관, 법원공무원), 외부위원
  - 법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, 관련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
  - 규칙 제8조제6항(“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,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”)에 따라 위원 구성 시 공개적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⇨ 신청 또는 추천의 이유(전문성, 그 동안의 경험 등)를 요청함으로써 위원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
  - 후술하는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논의 안건의 특성상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모든 위원이 각 안건을 순차적으로(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→ ②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→ ③ 외국인 체포·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順)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

- 각 안건의 순차적 논의에 따라 안건의 성격별로 위원을 추가 선정하는 등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도 가능

#### ▣ 간사 지정 방안

-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바, 재판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심의관을 간사로 지명하거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사법지원심의관을 공동 간사로 지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

### 3.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부의·회부 예상 안건 설명

####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

##### ▣ 논의의 필요성

- 지방법원의 합의재판부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구성원의 비대등성 때문에 진정한 합의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
- 실질적으로 대등한 3인의 숙려에 따른 결론이 합의부 본연의 모습임.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,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
-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는 최소 법조경력 16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므로, 종전보다 경험과 연륜이 높은 법관들에 의한 충실한 심리가 기대됨
-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등 법관인사시스템의 변화로 종래 합의부 구성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함
- 이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2019년 전국 지방법원 24개 재판부에서 경력대등부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 중임. 그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에 확대할 필요성 여부와 범위, 바람직한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 있음

##### ▣ 기존 논의 경과 소개

- 각급 법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
  - 2018. 1. ~4. 서울중앙지법, 대전지법, 대구지법, 부산지법, 광주지법 간담회
  - 2018. 7. 사법지원실 -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간담회
- 2018. 7. 23.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의결

- '지방법원의 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'
- '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고 향후 인사 여건에 따라 이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'

● 2018. 8. ~ 12. 총 3회에 걸쳐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시범실시를 위한 법원 간담회

● 2019. 2. 25.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시범실시

- 총 24개<sup>1)</sup> 재판부(민사합의 3개, 민사항소 15개, 형사항소 6개)
  - 서울중앙지법 10개 (민사합의 1개, 민사항소 6개, 형사항소 3개)
  - 의정부지법 2개 (민사항소 1개, 형사항소 1개)
  -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개 (민사합의 1개)
  - 인천지법 1개 (민사항소 1개)
  - 수원지법 2개 (민사항소 1개, 형사항소 1개)
  - 대전지법 2개 (민사항소 2개)
  - 대구지법 3개 (민사합의 1개<sup>2)</sup>, 민사항소 2개)
  - 부산지법 2개 (민사항소 1개, 형사항소 1개)
  - 광주지법 1개 (민사항소 1개)
- 2019. 상반기 전국 시범실시 재판부 간담회 및 재판부별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
- 2019. 하반기 소송대리인·변호인·공판검사를 상대로 한 외부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실시
- 2019. 10. 말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세미나 개최 예정

■ **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**

-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의 확대 여부, 범위 및 적절한 사무분담
-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구성 기준(희망여부, 경력분포 등), 사무분담 지속기간
-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인적·물적 지원방안(재판연구원 배치 여부 및 인원, 배당감축 여부 및 기준, 전자기록화 등)

1) 이 중 1개 재판부는 2019. 8. 26. 구성됨

2) 2019. 8. 26. 경력대등재판부 구성

- 경력대등부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등

## ②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

### ■ 논의의 필요성

- 2006. 4. 1.부터 공소가 제기되는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증거분리제출 시행되고 있으나, 당시 정재청구/공판회부 사건은 증거분리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
- 정재청구/공판회부 된 약식사건 기록은 「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」(재형 2003-1)에 따라 검찰청에 반환하지 않고 해당 법원의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되고 있으나, 현재 실무상 법원별, 재판부별로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
- 판사들이 미리 소송기록을 읽고 예단을 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, 통상 사건과 구별하여 정재청구/공판회부 사건에 대해서만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에도 증거분리제출을 시행할 필요성이 상당함. 반면, 증거분리제출을 위하여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기록 분실 염려 및 제1회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에는 증거분리제출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
- 이에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, 재판 실무의 통일적 시행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 있음

### ■ 기존 논의 경과 소개

- 2006년 증거분리제출제도 실시
  - 2005. 4. 1. 서울남부, 대전, 광주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
  - 2006. 3. 29.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정
  - 2006. 4. 전국 18개 지방법원 시행 (공판회부사건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제외)
  - 2006. 10. 전국 지원 단위 확대 실시 (공판회부사건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제외)
- 2017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폐지
  -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로 인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수, 형사

단독공판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/통상회부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등 사정 변경

● 2019년 현재 법원별, 재판부별 기록 반환 관련 통일적이지 않은 재판 실무

-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의 담당 재판부별 수사기록 반환 실무 상이함
- 서울중앙지방법원, 서울남부지방법원, 서울북부지방법원, 서울서부지방법원, 고양지  
원, 부천지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수사기록 반환하는 실무례 있음
-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, 그 적용 대상이 모든 사건인지 부인 사건만인지, 반  
환 시기가 공판회부 시인지 그 이후인지 등 실무례가 통일적이지 않음

■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

● 재판부 업무량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조화

-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후의 정재청구사건수의 변동,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 
따른 참여관 등의 업무 변화 등 분석
- 법관 및 참여관/실무관 등에 대한 증거분리제출 관련 의견 조화

● 관련 예규의 개정 등

- 「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」상 기록송부 규정 삭제,  
약식명령사건의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는 규정 신설 여부
- 「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」 개정 검토

● 수사기록 반환, 증거목록 제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개선절차에서 검찰 협력 방안

③ 외국인 체포·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

■ 논의의 필요성

- 우리나라가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(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 
접촉)는 파견국 국민이 체포·구속된 경우 영사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 나아가  
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제5조(국민의 보호), 대한민  
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제39조(구속 및 재판에 대한 기능), 대한민국과 중화  
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제7조(구속 및 체포의 통보와 접견)에서도 유사한 조항  
을 두고 있음
- 외국인 인신구속 시 위 조약에 따라 영사에 통보하거나 외국인에게 통보 관련 절차

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과의 외교 마찰 소지, 재외국민 보호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음. 게다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 건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 있음

## ■ 기존 논의 경과 소개

- 2017. 2.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‘외국인 구속 시 영사통보 규정에 관한 소고’ 검토
  -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사통보에 관한 고지절차의 이행에 관한 예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
- 2017. 2.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‘외국인 영장실질심사와 비엔나협약’ 검토
  -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사기관에 대한 통지요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,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므로 법원이 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, 적법절차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임
  - 급속을 요할 경우 재판장에 의한 집행지휘를 대비하여 필요사항 고지 및 통지의사 확인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수 있으나, 실무상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함
- 2017. 4. 및 2018. 3. 서울남부지법 ‘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등의 사무처리와 영사관계조약에 관한 검토’
  - 영장실질심사 단계 : 재판장이 외국인 피의자에게 영사기관에 통지를 원하는지 의사 확인 + 통지 원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사통보 절차를 보완하도록 명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보완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 + 통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조서에 기재
  - 법정구속 단계 : 기본적으로 영사통보 절차 등 이행 의무 법원에 있음 + 다만 법원에서 영사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위의 경우에 준해서 실무상 처리할 수밖에 없음
- 2019. 3. 사법정책연구원 ‘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통보에 관한 연구’ 발간
  - 영사통보 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

- 법원의 역할(형사상 인신구속 시/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 시) 제도화 필요
- 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

#### ▣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

- 형사상 외국인 인신구속에서의 법원의 역할 제도화
  - 영사통보의무가 있는지, 누가 영사통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,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
- 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서의 법원의 역할 제도화
  - 영사통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법원 실무 운영이 감당할 수 있는 대상 선별(우선순위 결정), 규범화 방식 등

#### ④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사전 검토

-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주요 대법원규칙
  - 민사소송규칙
    -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일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
  - 형사소송규칙
    -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일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
  - 가사소송규칙
    - 가사소송에 관한 절차 일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
  -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
    - 법원의 재판 사무의 처리(문서관리, 기록관리 등)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 규정
  -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
    - 민사사건의 합의부 심판 범위, 가사사건의 합의부 심판 범위 등을 규정
  -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    - 소장·상소장 기타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소가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
  -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    -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접수 및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

- 민사소송비용규칙
  - 민사소송에 부수하는 각종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
- 민사조정규칙
  - 민사조정신청 및 이에 관한 절차,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
- 민사집행규칙
  - 민사집행에 관한 제반 절차(강제집행, 보전처분 등)에 관하여 규정
- 가사보호심판규칙
  -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등의 관할, 조사, 심리 등에 관하여 규정
- 소년심판규칙
  -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, 보호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
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
  -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
- 인신보호규칙
  -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사건의 관할, 심리 등에 관하여 규정
-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주요 내규·예규 등
  -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
    - 가정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장사항, 사무분담, 순회판사 및 순회조사관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
  -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
    -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 처리기준 등을 규정
  -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
    -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, 대리행위의 방식,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
- 위에서 제시한 규칙 이외에 재판제도와 관련한 규칙 등의 제·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의 회부에 따라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